

제6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(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-52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, 제10조제3항, 제24조, 제28조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-25호, 2020.8.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5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별표 4의 가목(유독물질)의 고유번호 “2017-1-761”란, “2018-1-832”란, “2018-1-844”란, “2019-1-899”란, “2019-1-913”란 및 “2020-1-997”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, 고유번호 “2020-1-1000”란 다음에 “2020-1-1001”란부터 “2020-1-1008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[별표 4]

유해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목록(제13조제1항 관련)

가. 유독물질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M계수	UN No.
			항목	구분	그림문자	신호어	유해·위험 문구		
2017-1-761	1,4-디클로로벤젠 [1,4-Dichlorobenzene]	106-46-7	발암성(3.6)	2	GHS08 GHS09	경고	H351 H400 H412	-	-
			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	1					
			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3					
2018-1-832	포스포로디플루오르산 에틸렌[Ethylene phosphorodifluoridite]	3965-00-2	급성독성-경구(3.1)	3	GHS05 GHS06 GHS09	위험	H301 H314 H411	-	-
			피부부식성/자극성(3.2)	1A					
			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2					
2018-1-844	테트라에틸닐실란[Tetraethenylsilane]	1112-55-6	인화성액체(2.6)	2	GHS02 GHS07 GHS09	위험	H225 H317 H400 H410	-	-
			피부과민성(3.4)	1					
			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	1					
			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1					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M계수	UN No.
			항목	구분	그림문자	신호어	유해·위험 문구		
2019-1-899	[(1,2,3,4,5-η)-N-메틸-2,4-사이클로펜타디엔-1-에탄아미나토(2-)-κN]비스(N-메틸메탄아미나토)지르코늄[(1,2,3,4,5-η)-N-Methyl-2,4-cyclopentadiene-1-ethanaminato(2-)-κN]bis(N-methylmethanaminato)zirconium]	1400865-07-7	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(2.12) 산화성액체(2.13) 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부식성/자극성(3.2)	1 3 4 1A	GHS02 GHS03 GHS05 GHS07	위험	H260 H272 H302 H314	-	-
2019-1-913	2-프로판산 1,1',1''-(1,2,3-프로판트리일), 2-프로판산 1,1'-[1-(히드록시메틸)-1,2-에탄디일]과 2-프로판산 1,1'-(2-히드록시-1,3-프로판디일)의 반응혼합물[Reaction mixture of 1,1',1''-(1,2,3-propanetriyl) 2-propenoate, 1,1'-[1-(hydroxyethyl)-1,2-ethanediy] 2-propenoate and 1,1'-(2-hydroxy-1,3-propanediyl) 2-propenoate]	부여되지 않음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과민성(3.4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3 1 2	GHS06 GHS09	위험	H301 H317 H411	-	-
2020-1-997	1-브로모프로판[1-Bromopropane]	106-94-5	심한눈손상/눈자극성(3.3) 발암성(3.6) 생식독성(3.7) 표적장기-1회노출(3.8) 표적장기-반복노출(3.9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2 2 1(1B) 3 2 3	GHS07 GHS08	위험	H319 H351 H360 H335 H373 H412	-	2344
2020-1-1001	4-tert-부틸피리딘[4-tert-Butylpyridine]	3978-81-2	급성독성-경구(3.1)	3	GHS06	위험	H301	-	-
2020-1-1002	3-(트리메톡시실일)-N,N-비스[3-(트리메톡시실일)프로필]-1-프로판아민[3-(Trimethoxysilyl)-N,N-bis[3-(trimethoxysilyl)propyl]-1-propanamine]	82984-64-3	급성독성-경구(3.1)	3	GHS06	위험	H301	-	-
2020-1-1003	트리스(2-피리딜메틸)아민[Tris(2-pyridylmethyl)amine]	16858-01-8	급성독성-경구(3.1)	3	GHS06	위험	H301	-	-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M계수	UN No.
			항목	구분	그림문자	신호어	유해·위험 문구		
2020-1-1004	2(3H)-벤조티아졸티온, 코발트 염 (2:1)[2(3H)-Benzothiazolethione, cobalt(2+) salt (2:1)]	29904-98-1	호흡기과민성(3.4) 피부과민성(3.4) 생식세포변이원성(3.5) 발암성(3.6) 생식독성(3.7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1 1 2 1(1B) 1(1B) 1 1	GHS06	위험	H317 H334 H341 H350 H360 H400 H410	10	-
2020-1-1005	헥사하이드로-5,5-디메틸-2-프로필-2H-2,4a-메타노나프탈렌-1(5H)-온[Hexahydro-5,5-dimethyl-2-propyl-2H-2,4a-methanonaphthalen-1(5H)-one]	1392277-05-2	심한눈손상/눈자극성(3.3) 피부과민성(3.4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2 1 1 1	GHS07 GHS09	경고	H319 H317 H400 H410	-	-
2020-1-1006	2,6-디메틸-4-(2,2,3-트리메틸-3-사이클로펜텐-1-yl)-2-사이클로헥센-1-올[2,6-Dimethyl-4-(2,2,3-trimethyl-3-cyclopenten-1-yl)-2-cyclohexen-1-ol]	1401065-88-0	심한눈손상/눈자극성(3.3) 피부과민성(3.4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2 1 1 1	GHS07 GHS09	경고	H319 H317 H400 H410	-	-
2020-1-1007	시아노아세트산과 10-운데세날의 반응물 [Cyanoacet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10-undecenal]	124358-45-8	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1 1	GHS09	경고	H400 H410	-	-
2020-1-1008	(6E)-6-(2,4,4-트리메틸사이클로펜틸리덴)헥사날 [(6E)-6-(2,4,4-Trimethylcyclopentylidene)hexanal]	1429808-42-3	피부과민성(3.4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1 1 1	GHS07 GHS09	경고	H317 H400 H410	-	-

비 고

\* 예방조치문구는 [별표 1] 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”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

\*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

부 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●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-14호

사방지 지정변경(위치정정)

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변경 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5일

동부지방산림청장